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14)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9. 12. 16.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9. 12. 16.
- 라. 위원회 상정 : '99. 12. 24.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장 임용에 있어서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됨에 따라, 별정동장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단위기관 안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하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장동철)

- 동장이 일반적으로 됨에 따라 별정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단위기관 안에서 동질적 업무로 한정하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장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연월일 : 1999. 12.

제출자 :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동장임용에 있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됨에 따라, 별정동장등에 관한 내용 삭제( 법 제109조제2항 )
- 나.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단위기관 안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함(안 제7조)
- 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1항 단서규정)

## 3.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6.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운영 12100-124('99. 11. 16)호의 조례 개정 표준안

##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중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u>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u>(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적용범위)①----- -----<u>지방별정직공무원</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전보)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u>단위기관에서 전보</u> 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조(전보)----- -----<u>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u>----- ----- -----</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 ----- -----<u>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